번호			근골격계질환의 정의와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, 건설현장 예
3			방대책
			제135회 제2교시 3번 · 학습용 답안 예시
			1. 개요(제656조)
			· 근골격계질환: 반복 동작, 부적절한 작업자세, 무리한 힘의 사용, 날카로운
			면과의 신체접촉, 진동·온도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
			· 발생 부위: 목·어깨·허리·팔·다리의 신경·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
			· 근골격계부담작업: 작업량·작업속도·작업강도·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
			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
			· 예방관리 프로그램: 유해요인 조사·작업환경 개선·의학적 관리·교육훈련·평
			가를 포함한 종합 계획
			2. 건설현장 발생원인
			· 작업 요인: 철근·거푸집·자재 인력 운반, 쪼그림·팔 들기 등 부적절한 자세
			· 반복·힘 요인: 결속·미장 등 반복 동작, 공구 파지에 필요한 힘
			· 환경 요인: 브레이커·그라인더 등 진동 공구, 동절기 저온 작업
			· 관리 요인: 잦은 공정 변경, 협력업체·일용 근로자 비중이 커 작업조건 파
			악과 교육이 어려움
			· 개인 요인: 연령, 과거 병력, 체력 차이
			3.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(제662조)
			·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			· 5명 이상 발생 +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% 이상인 사업장

번호			· 노사 간 이견 지속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을 명령한 사업장
3			· 작성·시행 시 노사협의 필수, 분야별 전문가 지도·조언 가능
			4. 사업주 기본 조치(제657~661조)
			· 정기 유해요인조사 3년마다,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조사
			· 수시 조사 1개월 이내: 질환자 발생, 새 작업·설비 도입, 작업환경 변경
			· 조사 방법: 면담·증상 설문·인간공학적 조사, 근로자 대표 등 참여
			· 조사 결과 우려 시 인력작업 보조설비 등 작업환경 개선(제659조)
			· 유해요인·징후·대처요령·올바른 자세 주지(제661조)
			5. 건설현장 예방대책
			· 공학적: 양중장비·운반대차로 인력 운반 축소, 작업대 높이 조절
			· 공학적: 5kg 이상 물품 중량·무게중심 표시, 곤란 물품 보조도구(제665조)
			· 관리적: 중량·빈도·운반거리에 따른 작업·휴식시간 배분(제664조)
			· 관리적: 무게중심 낮추기·몸 밀착 등 자세 안내(제666조), 2인 1조 운반
			· 관리적: 작업 전 스트레칭, 신규·일용 근로자 채용 시 교육
			· 의학적: 증상 호소자 조기 발견, 징후 근로자 의학적 조치(제660조)
			6. 운영상 유의사항
			· 공종 변경을 수시 조사 사유(작업환경 변경)와 연결하여 관리
			·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조사·교육 범위에 포함
			· 평가 결과를 다음 공정의 작업계획과 장비 계획에 환류
			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